

# 생활관 코로나19 음성확인제 안내

## [추가 공지사항]

1. 입사 전 음성확인서(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결과 또는 격리통지서) 제출 후 입사 가능
2. 생활관 거주 기간 중 코로나 양성 판정, 자가격리자,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: 당일 본가 귀가

※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V.강의실·기숙사 등 시설 관리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,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

생활관은 다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,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입사 시 ‘음성확인제’를 도입하였습니다.

해당 증명서(확인서) 미비 시 **입사가 불가능**하오니, 사전에 **준비**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: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또는 격리통지서/확진문자

○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또는 격리통지서/확진문자 중 선택 제출

○ **신속항원검사**

- 입사일 기준 1일 전 또는 입사 당일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(입사 시 현장제출)
- 유효기간: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(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)

- **자택이 아닌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에서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허용**

○ PCR 검사

- 입사일 기준 1~2일 전 또는 입사 당일 실시한 검사 결과만 인정(입사 시 현장제출)
- 유효기간: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(검사당일과 그 다음날까지)

○ 격리통지서/확진문자

- 입사일 기준 격리 해제일이 180일 이내인 완치자만 인정(입사 시 현장제출)
- 민원24에서 격리통지서 다운로드, 확진 또는 격리문자(본인이름 확인 및 확진/격리 날짜가 확인가능한 문자만 인정)

※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 변경 시 생활관 코로나19 음성확인제 변경 가능

2022.09.07.

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장

### 참고3

## 접종완료자 등의 범위 및 증명서 발급 방법 및 확인 방식

출처: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3-5판, 2022.2.16.)

대상자	발급방법(시행일시)	유효기간	확인방식
<b>접종완료자</b> 추가접종	1) 전자 증명서 • COOV, 네이버, 카카오톡 등 2) 종이 증명서 (예방접종증명서, 예방접종확인서) 3) 예방접종 스티커	접종완료 14일 이후부터 180일 없음	1)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 •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)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
<b>미접종 완치자</b> 접종완료 완치자	1) 종이 증명서 (격리해제확인서) 2) 전자 증명서	격리해제일 로부터 180일 없음	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<b>코로나19 음성 확인자</b>	1)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-1) 종이 증명서 (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) 1-2) 문자 통보(22.2.7.-) •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 한정	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	1-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문자 통지서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
	2) PCR 음성 결과통지서 2-1) 문자 통보(~22.2월말) 2-2) 종이 증명서 (PCR 음성 확인서) 2-3) 전자 증명서	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	1-1) 문자 통지서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<b>예외자</b> (의학적 사유) 기타 건강상 이유	1) 종이 증명서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 2) 전자 증명서	없음 180일 (6개월)	1)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•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

※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 확인제 지침(제3-5판) 확인(p6~39)

• 3.1. 0시부터 보건소(선별진료소, 임시선별진료소)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하며,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의 음성확인 소견서는 발급 가능

\*\*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